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19년 10월 10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다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전환 우선주 7,092,200주 (액면가:500원)
2. 신주의 발행 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1주당 발행가액: 28,200원(미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를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임.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기명식 우선주로서 기존에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와 성격이 상이하며 신규 발행 건으로 상장되어 있지 않아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당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를 통해 준거가 되는 주식을 선정하여 동 주식의 주가를 바탕으로 기준주가를 산출한 후, 일정한 괴리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기준주가를 산출하고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기로 결정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45%의 우선주 괴리율을 적용하여 우선주 기준주가를 산출한 후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text{우선주 기준주가} \times \left[1 - \text{할인율}(25\%) \right]$$

▶ 1차 발행가액 = $\frac{\text{우선주 기준주가} \times \left[1 - \text{할인율}(25\%) \right]}{1 + \left[\text{유상증자비율} \times \text{할인율}(25\%) \right]}$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45%의 우선주 괴리율을 적용하여 우선주 기준주가를 산출한 후 25%의 할인율을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우선주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5%의 우선주 괴리율과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5%의 우선주 괴리율과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당사 보통주식 가중산술평균주가 × (1-괴리율) ×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9년 11월 06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9년 12월 02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9년 12월 03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group.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함.

4. 신주의 배정 기준일: 2019년 11월 11일 (예정)

5.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거하여, 발행신주의 20%는 우리사주에 우선 청약하며, 동법 제165조의6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배정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사주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일반모집 청약 예정임)

6.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일괄 청약함.

(2) 구주주 청약: 구주주 중 주식을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중인 일반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계좌의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삼성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음. 다만, 구주주 중 주식을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하지 않은 특별계좌부 등재 주주의 경우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삼성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음.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초과 청약: 제2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음.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음.

(4)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며,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 (5) 일반공모를 거친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인수계약서에 의거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7. 신주의 청약예정일:
 - (1)우리사주조합: 2019년 12월 5일
 - (2)구주주: 2019년 12월 5일~6일
 - (3)일반공모: 2019년 12월 10일~11일
 8. 신주의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함.
 9. 청약증거금의 대체: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함. 일반공모 총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함.
 10. 주금 납입 은행: 우리은행 한강로금융센터
 11. 주금납입/환불 예정일: 2019년 12월 13일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1월 1일
 13. 청약사무 취급처:
 - (1) 우리사주조합: 삼성증권(주)본·지점
 - (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아모레퍼시픽그룹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지점
 - 2) 삼성증권(주)본·지점
 - (3)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삼성증권(주) 본·지점
 - (4) 일반공모청약: 삼성증권(주) 본·지점
 1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함.
 - (2)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제3항에 의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예정임.
 - (3)신주인수권증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
 - 1) 계좌대체거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함.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됨. 기간은 2019년 11월 20일(예정)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 거래 가능함.
 - 2)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함.
 - 3)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 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음.
 -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삼성증권(주) 및 SK증권(주)를 통해 거래 가능.
 15.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2월 26일
 16.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주)
모집주선회사: SK증권(주)

17. 기타사항:

- (1) 본 신주발행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19년 10월 24일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배동현